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4. 30.>

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・경력 기준(제8조제3항 관련)

- 1. 자격기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2. 학력 · 경력 기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,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사람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 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 - 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
 - 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
 - 3)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
 - 4)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
 - 5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
 - 6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
 - 마.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